

第133回(定例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第3號(附錄)

本會議會議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目 次

1. 補充質問 答辯書	1面
-------------------	----

보충질문답변서

번호:

(기획예산과)

질문의원	남 재 경 의원(운영위원회간사: 부암동)
【질 문】 ○ 1,165억원에 이르는 주민들 세금을 잘못 쓰고 있다. 세출구조가 잘못되어 있음으로 구조조정을 하든가 인구유입정책을 펴야 한다 ○ 우리 구의 인건비성 경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가 1년 예산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기준으로는 1,253억원에 1,165억원이니까 93.6%이므로 나머지 6.7%를 가지고 지역개발사업, 사회개발사업, 주택개발사업을 하게 되는데 정말 세출구조가 잘 되어 있는 것인가? ○ 민선 이전에는 일반행정비가 높았는데 민선 이후에는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는데 종로구는 2000년도 48%이던 일반행정비가 지금은 61%인 바 세출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 변】 ○ 우리 구 예산편성의 질적 분석에서 경직성경비가 많은 것은 첫째, 예산의 총규모가 작고, 둘째, 전체 예산의 절반을 인건비성 경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건비성 경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출구조를 개선하려면 인력 감축을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일반직 및 고용, 일용직이 퇴직 할 경우 충원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일부 인력을 감축 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 구의 예산편성 비율에서 일반행정비의 비중이 높은 바, 이의 개선을 위해서 예산 편성 시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여 경직성경비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젊고 유능한 직원들을 선정하여 「재정확충 아이디어 팀(가칭)」을 구성·운영하여 구 재정의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재정확충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금년 6월말 현재 인구는 18만 2천명입니다만, 내수, 신문로, 도림지구 등의 도심재개발 사업으로 2004년부터는 인구가 증가추세로 돌아설 것이며, 서울시에서도 우리 구의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 건의를 수용하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현재 용역중인 바, 향후에는 우리 구의 비과세 면적이 많고 특정지역 주변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등의 특수성이 어느 정도는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번호 :

(기획예산과)

질문의원	조기태 의원(재무건설위원회간사:청운,효자동)
【질 문】 ○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권한을 찾을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요구하기 위해서 분권추진위원회가 필요하며, 구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기구가 필요한 바, 공무원노조, 구청 간부, 시민사회단체, 전문성이 있는 교수, 구의회 의원을 망라한 혁신추진기구를 만들어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추진할 용의는?	
【답 변】 ○ 정부에서 4월 8일 대통령 자문기구로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분권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 기초자치단체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 권한이양을 요구할 수 있으나 공통된 사항이 많은 관계로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공동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안과제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서도 지방분권추진협의회 구성을 권장하고 있는바, 우리 구에서도 여건이 성숙되면 관계전문가들로 조직을 구성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위원 선정시에는 구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총 무 과)

질문의원	조기태 의원(재무건설위원회간사:청운,효자동)
【질 문】 ○ 기획예산과 예산팀을 재무국 소속으로 직제 변경할 의향은?	
【답 변】 ○ 살기좋은 종로건설을 위하여 수립 시행하는 중·장기업무 계획 및 매년 주요업무 계획과 본 계획을 토대로 편성하는 예산업무는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예산편성과 집행을 같은 국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 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국에서 처리하는 취지는 상호 보완 및 견제 하에 적정한 편성과 집행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서울시 및 25개 구청 중 마포, 서초구를 제외한 23개 구청이 서로 다른 국에서 처리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번호:

(총무과)

질문의원

남재경 의원(운영위원회간사 : 부암동)

【질 문】

○ 구내식당종사원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있는 사유는?

【답 변】

- 최저임금의 범위는 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와 그에 의거한 제외 임금과 산입되는 임금에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통상임금」범위와 유사합니다
- 다시 말씀드리면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입니다
- 따라서 구내식당종사원 기본급 512,000원에 매월 고정적으로 모든 종사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는 직책수당 120,000원, 격무비 50,000원, 복리후생비60,000원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액 514,150원을 초과한 742,000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참고적으로 노동부 임금정책과(☎503-9732), 노동부 근로감독부서 (☎2250-5720) 및 노동부 홈페이지 최저임금 안내를 기초하여 답변 드렸습니다.